

제 호

###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

업 체 명 :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 표 자 :

주 소 :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.

물자의 품 목	규 격	단 위	수 량	임 무 고 지 내 용			임 무 기 간
				임무의 내 용	사용기관 (인수기관)	인 도 · 인수 장소	연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							~

년 월 일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또는 시·도지사  
(인)

자르는

선(간인)

제 호

###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

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수령 자	성 명	(인, 서명)	생년월일	
	주 소		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	
	수령일시		수 령 장 소	

## 안 내 사 항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1.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 또는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
2.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
3.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,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때(전달을 지체한 때를 포함한다)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

————— 자르는 선(간인) —————

1. 이 「중점관리대상자원 지원 및 임무고지서」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2. 임무고지서 교부권자는 이 「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」의 교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